실업급여 수급 관련 민원인 배부용 서류 목록

[수급자격] 신청서 및 안내문 (별지)

[징계해고] 사업주 확인서 ····· 3
[질병] 안내문 및 사업주 확인서 ····· 5
[간병] 안내문 등 ····· 7

[원거리 발령] 안내문 및 사업주 확인서 ····· 11
[지사 폐쇄로 인한 본사 발령] 안내문 및 사업주 확인서 ····· 13
[사업장 이전] 안내문 및 사업주 확인서 ····· 15
[근무지 이전] 안내문 및 사업주 확인서 ····· 17
[파견 사업장 이전] 안내문 및 사업주 확인서 ····· 19
[해외 발령으로 배우자 합가] 안내문 및 사업주 확인서 ····· 21

[배우자와의 합가] 안내문 ····· 23
[부모 부양을 위한 거주지 이전] 안내문 ····· 24

[육아] 안내문 등 ····· 25

[산전·후 휴직 불가] 사업주 확인서 ····· 29
[근로조건 변동] 사업주 확인서 ····· 30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 확인서 ····· 31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 ····· 32
[휴업 또는 휴직으로 급여 감액] 사업주 확인서 ····· 33
[52시간 초과] 사업주 확인서 ····· 34

[서식] 사업자등록증(임대업 등) 사실확인서 ····· 35
[서식] 수급자격 취소 신청서 ····· 36
[서약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 37

[자영업자] 매출감소 제출서류 ····· 38

징계해고 관련 사업주 확인서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소재지	(전화 번호:)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 근로자의 퇴직 사유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1. 상기인의 직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2. 귀사는 상기인의 퇴직사유를 **'징계에 의한 권고사직(징계해고)'**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는 근로자가 아래의 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것입니까?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해고된 것입니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1의2」 참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귀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것입니까? (무단결근일수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규정을 제출해주세요)

   라) 귀사에서 상기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귀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한 것입니까? (이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규정을 제출해주세요)

   마) 위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기인의 퇴직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 붙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1의2」

이직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오며, 차후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위 :

작성자 성명 : (서명)

사업장 명 : (직인)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1의2」 <개정 2010.2.9.>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한 경우 준비 서류>

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1. 퇴직 이전 당시 진단서 (3개월(13주)이상)

-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3개월 이전)이어야 합니다.**
- 의사의 소견으로 향후 치료기간 및 의견(직무수행이 곤란하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질병·부상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질병·부상 정도가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2. 병가, 휴직관련 퇴사 확인서(사업장측 작성)

- 질병·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직 회피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하였는지를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직(병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업무수행의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휴직(병가)요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시점(현재) 건강상태 소견서

- 소견서에는 당사자의 질병 호전 상태, 치료 진행상태 그리고 **"질병이 완치(또는 호전)되어 근로(취업활동, 직장생활 등)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소견서에는 **현재까지 진료내역(통원치료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소견서를 통해서 당사자의 직업활동(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함 또는 취업활동이 아직은 불가능 함 등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병이 완치(또는 호전)된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청(최대 3년)**을 해두셔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입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1년 이내 연장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4. 퇴사 이후 치료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 (각 해당자에 한함)

※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신다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담당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귀 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하여 고용보험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요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직당시 근무부서			

확 인 내 용 (해당사항에 √표시)		
1. 상기인의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2. 상기인이 평소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있다. ·시 기 : ·질병내용 :	□ 없다. ·판단 이유 :
3. 상기인의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의 수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 여부	□ 가능함 ·판단 이유 :	□ 불가능함 ·판단 이유 :
4. (질병 등과 관련하여) 상기인을 업무가 가능한 부서로 전환배치 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전환배치 가능 (부서명 및 업무) →	
	□ 전환배치 불가능 ·판단 이유 :	
5. (질병 등과 관련하여) 상기인이 직무 전환 배치, 휴가(병가)나 휴직 등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있다 (부서명(업무) 및 휴직 기간-구체적으로) : □ 없다 ·이 유 :	
6. 회사 규정상 상기인에게 퇴사 대신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여할 수 있다. ·가능 기간 및 병가 사용 여부 : □ 병가 부여 불가능 ·이 유 :	
7. 기타 상기인의 질병 등으로 이직과 관련된 참고사항		

20 . . .

위의 사실을 확인 합니다.

확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직 책 :

사 업 장 명 : (직인)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병으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구비서류

1. 사업장 확인서 (소정 서식) 1부

- 간병의 사유로 휴직, 혹은 대체업무, 근로시간의 변경 등이 불가함을 입증 (인사규정 첨부)

2. 간병 대상자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소 30일 이상

- 질병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함 또는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함을 입증

3. 본인(수급자격인정신청자)만이 간병을 해야 함을 입증할 각종 서류

- 간병 대상자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수급자격인정신청자)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원들의 재직 증명서
-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 가족원들의 주민등록등본
- 퇴직사유 확인서 (근로자용)
- 기타 본인만이 간병을 해야 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4. 실업급여신청 시-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할 서류

(더 이상 본인이 간병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의미함)

- 질병이 완치, 혹은 호전되어 간병 대상자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게 됐음을 입증하는 진단서(소견서)
- 요양원을 통한 간병, 혹은 개별 간병인을 고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요양원 입원확인서 또는 간병확인서)
-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원이 간병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입증 서류 (예: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어 간병을 하게 된 경우 퇴사증명서 등)

※ 1~3번까지의 서류는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이며, 4번의 서류는 실업급여수급 신청 시 구직활동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사유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청(최대 3년)**을 해두셔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간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

귀 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여 고용보험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요청하오니,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이직당시 근무부서			

확 인 내 용 (해당사항에 ∨표시)		
1. 상기인의 업무내용(구체적으로)		
2. 상기인이 평소 간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있다. ·시기: ·내용:	☐ 없다.
3. 상기인의 간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의 수행이 곤란 또는 불가느 여부	☐ 가능함	☐ 불가능함
4. 상기인을 간병과 관련하여 업무가 가능한 부서로 전환배치 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전환배치 가능(부서명 및 업무) →	
	☐ 전환배치 불가능	
5. 상기인이 간병과 관련 직무전환 배치 또는 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있다(부서명 및 업무) : ☐ 없다	
6. 회사 규정상 상기인에게 퇴사 대신 간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인사규정 첨부)	☐ 부여할 수 있다. (가능기간:) ☐ 부여 불가능 (이유:)	
7. 기타 상기인의 이직과 관련된 참고사항		

20 . . .

위의 사실을 확인 합니다.

확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직 책 :

사 업 장 명 : (직인)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 확인서 (근로자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사 업 장 명			

※ 간병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 ※

① 회사에 재직 당시 담당했던 업무는 무엇입니까?

② 부양가족의 질병명:

③ 부양가족의 질병정도 :
1) 진단서 상 진단 주 수
2) 만약 입원했었다면 입·퇴원 기간(. . . ~ . . .)
3) 입·퇴원 후 통원치료 기간

④ 현재 부양가족의 건강상태 및 본인의 구직활동 가능여부를 작성해주십시오.
(예시: 현재는 치료가 완료되었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함.)

※ 위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근로자) : (인 또는 서명)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병 확인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인 이름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주 소 :

위 수급자격 신청인 ( )의 가족(가족 관계 :)을
본인 (간병인 :) 은 2 0 년 월 일부터
간병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간병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주 소 :

2 0 년 월 일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직 시 제출 서류

1.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2. 발령 전·후 근무지(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사발령장, 근로계약서 등

3. 사업주 확인서 1부 (소정 서식)

4. 네이버 길찾기 (출·퇴근시간대 기준)

- 집 → 발령 전 근무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미만
- 집 → 발령 후 근무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퇴 직 사 유 확 인 서 (사 업 주 용)

이 직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이직 당시 담당업무			

퇴직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기시 바랍니다)

※ 원거리 인사 발령으로 인한 퇴사자

① 이직일(*퇴사일) :

② 인사발령 일자는 언제이며, 발령지는 어디입니까?

○ 인사 발령 일자:

○ 발령 전 근무지(주소):

○ 발령 후 근무지(주소):

③ 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하였거나, 교통비를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④ 근로자에게 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숙소 또는 기숙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⑤ 제공한 숙소가 있다면 규모와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⑥ 근로자가 재발령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⑥ -1 재발령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 요청시 재발령 혹은 재배치가 가능한가요? 불가능 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⑦ 그 외에 상기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 하신 노력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위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인사발령장 등)를 첨부하시기바랍니다

이직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오며, 차후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직책 :

사 업 장 명 : (직인)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사 폐쇄로 인한 본사 발령으로 인한 퇴직 시 제출 서류

1. 사업장-별도 사무실 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1부.

(최초 계약서부터 준비)

2. 발령 전·후 근무지(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사발령장, 근로계약서 등

3.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4. 사업주 확인서 1부 (소정 서식)

5. 네이버 길찾기 (출·퇴근 시간대 기준) 각 1부

- 집 → 지사: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미만
- 집 → 본사: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퇴 직 사 유 확 인 서 (사 업 주 용)

이 직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이직 당시 담당업무			

퇴직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기시 바랍니다)

※ 지사 폐쇄로 인한 본사 발령 퇴사자

① 이직일(*퇴사일) :

② 지사 폐쇄일 및 인사 발령 일자는 언제이며, 발령지는 어디입니까?

○ 지사 폐쇄 일자:

○ 인사 발령 일자:

○ 발령 전 근무지(주소):

○ 발령 후 근무지(주소):

③ 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하였거나, 교통비를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④ 근로자에게 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숙소 또는 기숙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⑤ 제공한 숙소가 있다면 규모와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⑥ 근로자가 주소지 인근으로 재발령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⑥ -1 재발령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 요청시 재발령 혹은 재배치가 가능한가요? 불가능 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⑦ 그 외에 상기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 하신 노력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위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인사발령장 등)를 첨부하시기바랍니다

이직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오며, 차후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직책 :

사 업 장 명 : (직인)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직 시 제출 서류

1.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이전 전. 이전 후 각 1부

- 없을 경우 근무지를 확인 가능한 서류

  예)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3. 사업주 확인서 1부 (소정 서식)

4. 네이버 길찾기 (출·퇴근 시간대 기준) 각 1부

- 집 → 이전 전 근무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미만
- 집 → 이전 후 근무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퇴 직 사 유 확 인 서 (사 업 주 용)

이 직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이직당시 담당업무			

퇴직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기시 바랍니다)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자

① 이직일(*퇴사일) :

② 이전 시기는 언제이며 어디로 이전을 하였습니까?

○ 사업장 이전 시기:

○ 이전 전 사업장 주소:

○ 이전 후 사업장 주소:

③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하였거나, 교통비를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④ 근로자에게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숙소 또는 기숙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⑤ 제공한 숙소가 있다면 규모와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⑥ 그 외에 상기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 하신 노력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위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이전 전 사업자등록증 +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를 첨부하시기바랍니다

이직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오며, 차후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직책 :

사 업 장 명 : (직인)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 시 제출 서류

1. 근무지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무지(사무실.공장 등)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퇴직자 본인의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재직)증명서 (근무지 기재)

3.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4. 사업주 확인서 1부 (소정 서식)

5. 네이버 길찾기 (출·퇴근 시간대 기준) 각 1부

- 집 → 이전 전 근무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미만
- 집 → 이전 후 근무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근무지(지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

이 직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이직당시 담당업무(부서)			

퇴직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상기 퇴직자는 어떤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 장소는 어디입니까?
○ 직무 내용:
○ 근무 장소: (이전하기 전 소재지:)

② 상기 퇴직자가 근무하던 장소의 이전 일자와 이전 이후 소재지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지 이전 일자: 년 월 일
○ 이전 이후 근무 장소의 소재지:

③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하였거나, 교통비를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

④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과 관련하여 숙소 또는 기숙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

⑤제공한 숙소가 있다면 규모와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⑥ 근로자가 재발령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요청이 있었다면 재발령 혹은 재배치가 불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⑦ 그 외에 상기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 하신 노력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 위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참조)

20 . . .

위의 사실을 확인 합니다.

확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직 책 :
사 업 장 명 : (직인)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직 시 제출 서류

1. 사업장과 파견 사업장 간의 도급(위탁)계약서 1부
   - 최초 계약서부터 준비
2. 사업장-별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부
   - 최초 계약서부터 준비
3. 퇴직자 본인의 인사 발령장 또는 근무 지시서 1부
   - 파견 사업장으로 근무 개시한 시기 등 사실 확인
4. 이전한 별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부
   - 별도 사무실이 이전한 시기와 장소 확인
5.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6. 사업주 확인서 1부 (소정 서식)
7. 네이버 길찾기 (출·퇴근 시간대 기준) 각 1부
   - 집 → 이전 전 근무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미만
   - 집 → 이전 후 근무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퇴직사유 확인서 (사업주용)

이 직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이직당시 담당업무(부서)			

퇴직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자

① 이직일(퇴사일):

② 파견 사업장과의 도급 계약으로 인한 ㉮근무 개시 일자 ㉯근무지 ㉰변경 시기 ㉱변경 후 소재지

○ 도급 계약으로 인한 근무 개시 일자:

○ 도급 계약 사업장 명과 근무 장소(주소): ( )

○ 파견 사업장 이전 일자:

○ 파견 사업장 이전 후 근무 장소(주소):

③ 파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하였거나, 교통비를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⑤ 제공한 숙소가 있다면 규모와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⑥ 근로자가 재발령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요청이 있었다면 재발령 혹은 재배치가 불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⑦ 그 외에 상기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 하신 노력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위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참조)

20 . . .

위의 사실을 확인 합니다.

확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직 책 :

사 업 장 명 : (직인)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발령(배우자 합가)으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구비 서류

1. 해외 발령 관련 사업주 확인서 (소정 서식) 1부

- 사업주 또는 인사부서장이 작성하여 사업장 직인 날인

2. 해외 인사 발령장 사본 1부 (근무 지시 기간 명시)

3. 해외 근무자에 대한 지원 규정(인사 규정 등) 사본 1부

4. 퇴직자 본인의 출입국 관리 기록 1부

5.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1부

-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6.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퇴직자의 거주지 이전 시기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7.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배우자의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퇴직사유 확인서 (사업주용)

이 직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이직당시 담당업무(부서)			

퇴직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발령으로 인한 퇴사자

① 이직일(퇴사일):

② 해외발령 일자는 언제이며, 발령지는 어디입니까?

○ 해외 발령 일자:

○ 해외 근무 지시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해외 발령 이전 근무 장소(주소):

○ 해외 발령 이후 근무 장소(주소):

③ 해외 발령과 관련하여 회사 측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숙소 또는 기숙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⑤ 제공한 숙소가 있다면 규모와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⑥ 근로자가 국내 발령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요청이 있었다면 재발령 혹은 재배치가 불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⑦ 그 외에 상기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 하신 노력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위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참조)

20 . . .

위의 사실을 확인 합니다.

확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직 책 :
사 업 장 명 : (직인)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합가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구비 서류

1. 퇴직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및 혼인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결혼 이후 합가 시에는 퇴직일 이전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본으로도 가능

* 결혼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제출
(퇴사일 기준 2개월 이내 결혼 예정 및 거소 이전)

2.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퇴직자의 거주지 이전 시기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3.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배우자의 거주지 이전 시기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4.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배우자의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무지 명시)

*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5. 네이버 길찾기 (출·퇴근 시간대 기준) 각 1부

- 합가 전 거주지 → 근무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미만
- 합가 후 거주지 → 근무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부모 부양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구비 서류

1. 본인(신청자)만이 부양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할 서류

- 부양 대상자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신청자)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원들의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다른 가족원이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 다른 가족원이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가족원들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본인만이 부양해야 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2. 부양하여야 할 가족(부모)의 소득증명원 1부

- 부모가 고령인 경우(만 65세 이상)로서, 소득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함

3. 부양하여야 할 가족(부모)의 장애사실 증명원 1부

- 부모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 지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이 입증되어야 함

4.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퇴직자의 거주지 이전 시기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5. 네이버 길찾기 (출.퇴근 거리 입증 자료)

- 합가 전 거주지 → 근무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미만
- 합가 후 거주지 → 근무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육아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구비 서류

1.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소정 서식) 1부

-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인사규정 첨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퇴직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육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경우에만 해당

3. 본인(신청자)만이 육아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할 서류사업주

- 배우자 재직증명서(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근로자용)

4. 실업급여 신청시 -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할 서류 1부

- 재원증명서, 보육확인서 등

※ 1~3번까지의 서류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이며, 4번의 서류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구직활동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사유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청(최대 3년)**을 해두셔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귀 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하여 고용보험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요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직 당시 근무부서			

확 인 내 용 (해당사항에 √표시)		
1. 상기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 시간	☐ 업무 내용: ☐ 근무 시간:	
2. 상기인이 평소 육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있다. · 시 기 : · 호소내용 :	☐ 없다.
3. 상기인의 소관 업무가 **육아와 병행이 가능**한 지 여부	☐ 가능 ☐ 불가능	
4. (육아와 관련하여) 상기인이 **직무전환 배치** 등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 있다(부서명 및 업무) : ☐ 없다	
5. (육아와 관련하여) 상기인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 있다 ☐ 없다	
6. (육아와 관련하여) 상기인에게 전환배치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을 해 줄 수 있었는지 여부	☐ 전환배치 가능(부서명 및 업무) →	
	☐ 전환배치 불가능	
7. (육아와 관련하여) 상기인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 있을 경우 요청기간 및 방법	☐ 있다 **(요청기간: ~)** **(요청방법:)** ☐ 없다	
8. 회사 규정이나 사정상 상기인에게 퇴사 대신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는 있었는지 여부	☐ 부여 가능(가능 기간 :) ☐ 부여 불가능(이유 :)	
9. 귀사에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있다 ☐ 없다	
10. 상기인의 육아로 인한 이직과 관련된 기타 참고사항		

이직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오며, 차후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직책 :

사 업 장 명 : (직인)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성 명		생년월일	

확 인 내 용 (해당사항에 √표시)	
1.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 시간	☐ 업무 내용: ☐ 근무 시간:
2. 신청인의 소관업무 성격상 육아와 병행이 가능한 지 여부	☐ 가능 ☐ 불가능
3. (육아와 관련하여) 직무전환 배치 등을 사업장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 있다(부서명 및 업무) : ☐ 없다
4. (육아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신청인에게 전환배치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전환배치 가능(부서명 및 업무) →
	☐ 전환배치 불가능
5. (육아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장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 있다 ☐ 없다
6. 휴가나 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 있을 경우 요청기간 및 방법	☐ 있다 **(요청기간:** ~ **)** **(요청방법:** **)** ☐ 없다
7. 회사 규정이나 사정상 퇴사 대신 휴가나 휴직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	☐ 활용 가능 (가능 기간 :) ☐ 활용 불가능 (이유 :)
8. 배우자가 현재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지 여부	☐ 그렇다 ☐ 아니다
9. 배우자가 현재 취업 중인지 여부	☐ 그렇다 ☐ 아니다
10. 육아로 인한 이직과 관련된 기타 참고사항	

이직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오며, 차후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직책 :

사 업 장 명 : (직인)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육확인서

수급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		

위 수급자격 신청인( )의 자녀(아기 이름:)를
본인(육아자:)은 20 년 월 일부터
육아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육아자)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연 락 처	☎		

20 . . .

성명 (인 또는 서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귀하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전 · 후 휴직 불가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귀 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여 고용보험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요청하오니,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이직당시 근무부서			

확 인 내 용 (해당사항에 ∨표시)

1. 상기인의 업무내용 및 출퇴근시간 (구체적으로 기재)		
2. 상기인이 평소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있다. ·시기: ·내용:	□ 없다.
3. (임신으로)상기인을 업무가 가능한 부서로 전환배치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전환배치 가능(부서명 및 업무) →	
	□ 전환배치 불가능	
4. (임신으로)상기인이 직무전환 배치 또는 근로시간 조정 등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 있다(부서명 및 업무) : □ 없다	
6. 회사 규정상 상기인에게 퇴사 대신 휴직을 부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인사규정 첨부)	□ 부여할 수 있다. (가능기간:) □ 부여 불가능 (이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제74조>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직책 :
사 업 장 명 : (직인)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귀 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여 고용보험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요청하오니,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직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퇴직 당시 근무 부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기인의 업무내용 및 출퇴근 시간 (구체적으로 기재)	□ 업무내용 : □ 출퇴근시간 :	
2. 상기인의 근로조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세요. -	□ (변동 전) □ (변동 후)	
3. 근로조건이 변동된 날짜는 언제 입니까? (변동 시점)	□ 년 월 일	
4. 귀사가 제시한 변동된 근로조건의 적용 기한은 언제 까지 입니까?	□ 년 월 일 까지	
5. 귀사가 제안한 변동된 근로조건에 대해 상기인이 동의하였나요?	□ 동의 ( )	□ 비동의 ( )
6. 귀사가 제안한 변동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나요?	□ 있음 ( )	□ 없음 ( )

* 귀사가 기재하신 상기 내용은 관할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직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오며, 차후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과태로 처분 및 형사 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직 책 :

사 업 장 명 : (직인)

★ 추가 첨부서류 ① 변동 시점 기준 전.후 각 2개월간 급여명세서
② 해당 기간(변동 시점 기준 전.후 총 4개월)의 근로자의 급여계좌 입출금 거내 내역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귀 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여 고용보험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요청하오니,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직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퇴직 당시 근무 부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기인의 업무내용 및 출퇴근 시간 (구체적으로 기재)	□ 업무내용 : □ 출퇴근시간 :
2. 상기인의 최초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근무시간 및 급여)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세요.	□ 근무 시간: □ 급여:
3. 귀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 예, 알고 있습니다. ( ) □ 아니오, 알지 못했습니다. ( )
4. 최저임금 미만 사실에 관련하여 추가로 진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해 주세요.	

* 귀사가 기재하신 상기 내용은 관할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직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오며, 차후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과태로 처분 및 형사 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직책 :

사 업 장 명 : (직인)

★ 추가 첨부서류 ① 퇴직일 기준 직전 1년간 급여명세서
② 근로계약서
③ 해당 기간(퇴직일 전 1년간)의 근로자의 급여계좌 입출금 거내 내역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사업주용)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체불 기간 및 체불 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급여 내역 전부 기재)

해당 월	정기지급일 (연월일)	지급대상기간 (예: 1일~말일)	지급해야 할 금액(①)	실제 지급일자	지급한 금액(②)	체불 금액 (①-②)
합계 (개월분)				-		

이직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오며, 위 내용은 관할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차후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과태로 처분 및 형사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직책 :

사 업 장 명 : (직인)

★ 추가 첨부서류: ① 급여명세서, ② 해당 기간의 근로자의 급여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업/휴직기간 급여 지급 확인서 (사업주용)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임금 지급 기간 및 지급 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급여 내역 전부 기재)

해당 월	지급일	지급대상기간 (예: 1일~말일)	지급액	급여 감액 사유 (지급한 임금이 감액된 달이 있으면 사유 상세 기재)
				□ 휴업 □ 휴직 □ 해당없음 (사유:)
				□ 휴업 □ 휴직 □ 해당없음 (사유:)
				□ 휴업 □ 휴직 □ 해당없음 (사유:)
				□ 휴업 □ 휴직 □ 해당없음 (사유:)
				□ 휴업 □ 휴직 □ 해당없음 (사유:)
				□ 휴업 □ 휴직 □ 해당없음 (사유:)
				□ 휴업 □ 휴직 □ 해당없음 (사유:)
				□ 휴업 □ 휴직 □ 해당없음 (사유:)
				□ 휴업 □ 휴직 □ 해당없음 (사유:)
				□ 휴업 □ 휴직 □ 해당없음 (사유:)
				□ 휴업 □ 휴직 □ 해당없음 (사유:)
				□ 휴업 □ 휴직 □ 해당없음 (사유:)

이직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오며, 차후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과태로 처분 및 형사 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직책 :

사 업 장 명 : (직인)

★ 추가 첨부서류: ① 급여명세서 ② 근로자의 입출금 계좌 거래 내역
③ 급여 감액 사유 관련 증빙 서류 (휴업증명원, 휴직증명원 등)
* 휴직증명원은 사업장에서 발급 (휴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휴업증명원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관련 확인서 (사업주용)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담당 업무			

주 52시간 초과 내역

(퇴직 전 1년 동안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달에 대하여 상세 기재)

해당 월	시작일	종료일	소정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예) 23년 11월	11/1	11/7	40	56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이직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오며, 차후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과태로 처분 및 형사 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근로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사업주) : (직인)

★ 추가 첨부서류: ① 주52시간이 초과한 주가 속한 달의 근태 기록
② 근무시간 관련 내부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자에 대한 사실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자 등록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확인내용	부동산 임대업자	사무실설치여부	① 설치 ② 미설치		
		직원고용여부	① 고용 ② 미고용		
		사업내용			
	휴업중인 자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나 거짓일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 취소 요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		
취소 요청사유			

본인은 20 년 월 일 신청한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20 . . .

성명 (인 또는 서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귀하

(이천고용복지+센터 팩스 0508-8230-0272)

선 결	지청장		결재공람	소장	
접수일시		번호		과장	
처리부서	고용보험팀 (실업급여)			팀장	

서 약 서

본인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명령, 고용노동관서의 **원직 복직 지시**,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 본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대해 반환을 명령 받을 때에는 **전액 반환**할 것이며,
그 해고 및 쟁의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귀하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련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폐업 후 사업을 동거친족에게 양도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	□ 예 □ 아니오
2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있음**	□ 예 □ 아니오
	* '예'로 답한 경우 구체적 처분 및 처분일자:	
3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하였음**	□ 예 □ 아니오
	* '예'로 답한 경우 구체적 해당사항 □ 형법 제13장의 죄(방화와 실화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사기 및 공갈 상습범)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 형법 제 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4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하였음**	□ 예 □ 아니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귀하

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연속적자로 인한 폐업 확인서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폐 업 일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간 손익 현황

년 월	매 출 액	비 용	손 익
년 월	원	원	원
년 월	원	원	원
년 월	원	원	원
년 월	원	원	원
년 월	원	원	원
년 월	원	원	원

제출서류 목록

[ ] 관련 연도 월별손익계산서(복식부기 해당)
[ ] 최근 연도 표준손익계산서(국세청)
[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
[ ] 관련 연도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국세청)
[ ] 매출·비용(매입)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집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입비, 임차료, 종업원 급여 등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귀하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20% 이상) 감소로 인한 폐업 확인서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폐 업 일	

구 분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현황	전년 동기 매출액 현황 (전년 동기와 비교 시)	매출감소 비율
월	원	원	
월	원	원	
월	원	원	%
합 계	원	원	
월평균	원	원	

전년도 매출액 현황 (전년도 월평균과 비교 시)

월평균	원	**매출감소 비율**
합 계	원	%

1월	원	4월	원	7월	원	10월	원
2월	원	5월	원	8월	원	11월	원
3월	원	6월	원	9월	원	12월	원

제출서류 목록	[ ]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복식부기 해당), 월별손익계산서(법인) [ ]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국세청) [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 [ ] 관련 연도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국세청) [ ] 매출 증빙자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귀하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 연속 감소로 인한 폐업 확인서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폐 업 일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현황

월평균	원
년 월	원
년 월	원
년 월	원

기준월 직전 분기 월평균 매출액 현황

월평균	원
년 월	원
년 월	원
년 월	원

기준월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액 현황

월평균	원
년 월	원
년 월	원
년 월	원

제출서류 목록	[ ]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복식부기 해당) [ ]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국세청) [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 [ ] 관련 연도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국세청) [ ] 매출 증빙자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 ] 원천징수사업소득 대상자: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영수증, 지급명세서,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귀하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